

#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11월 2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년 11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2002년11월16일) 상정
-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2002년11월16일)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 □ 개정이유

- 소사국민체육센터 준공에 따라 운영프로그램의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체육시설관련 사용료 등을 조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방송사용료, 상행위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함(별표2 내지 별표5)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없음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 5. 심사결과

수정의결

### 6. 수정안의 요지

별첨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제54호
의결연월일	2002.12.24 (제101회)

제안년월일 : 2002년 12월 16일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체육시설관련 사용료 등을 조정하여 많은 시민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나 소사국민체육센터가 개장한지 5개월여밖에 안된 상태에서 부속시설 사용료를 개정하는 계획성이 없는 행정이므로 현행 사용료를 유지하면서 향후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개정토록 하고,
- 소사국민체육센터 신규프로그램인 제즈댄스 및 힙합댄스 사용료는 일반인에게는 적정하나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게는 과다하여 이용하기에 부담이 되므로 사용료 인하

## 2. 주요골자

- 소사국민체육센터 제즈댄스 사용료를 청소년 35,000원, 힙합댄스 사용료를 청소년 25,000원, 어린이 20,000원으로 인하(별표2)
- 부속시설사용료는 현행대로 유지(별표5)

##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대한수정안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2 소사국민체육센터 재즈댄스 사용료 청소년 “40,000원”을 “35,000원”으로 하고, 힙합댄스 사용료 청소년 “30,000원”을 “25,000원”으로, 어린이 “25,000원”을 “20,000원”으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2)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단위:원)					(별표2)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단위:원)					(별표2)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단위:원)					
경기장 별	사용구분	기 준	사용료		경기장 별	사용구분	기 준	사용료		경기장 별	사용구분	기 준	사용료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종합 운동장	육상장 (트랙)	1인 2시간	300	150	종합 운동장	육상장 (트랙)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종합 운동장	육상장 (트랙)	1인 2시간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보조 관디구장	1인 2시간	3,000	1,500	종합 운동장	보조 관디구장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종합 운동장	보조 관디구장	1인 2시간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시민운동장	1인 2시간	500	300	시민운동장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시민운동장	1인 2시간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부천 체육관	주 경기장	1인 2시간	2,500	1,000	부천 체육관	주 경기장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천 체육관	주 경기장	1인 2시간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보조 경기장	1인 2시간	1,000	800	부천 체육관	보조 경기장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천 체육관	보조 경기장	1인 2시간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송내 사회체육관	1인 2시간	1,000	800	송내 사회체육관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송내 사회체육관	1인 2시간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소사국민 체육센터	체육관	1인 2시간	1,000	800	체육관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체육관	1인 2시간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수영	개인 (1인/일)	일 반 3,000 청소년 2,500 어린이 2,000		수영	개인 (1인/일)	(현행과 같음)		수영	개인 (1인/일)	(개정안과 같음)				
		회원 (1인/월)	일 반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60,000 60,000 40,000	일 반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현행과 같음)	일 반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개정안과 같음)		
			청소년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50,000 50,000 35,000	청소년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현행과 같음)	청소년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개정안과 같음)		
			어린이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40,000 40,000 30,000	어린이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현행과 같음)	어린이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개정안과 같음)		
	에어 로비	1인/월 1인/일	45,000 2,000	에어 로비	1인/월 1인/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에어 로비	1인/월 1인/일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헬스장	1인/월 1인/일	청소년35,000 일반 45,000 청소년 1,500 일반 2,000	헬스장	1인/월 1인/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헬스장	1인/월 1인/일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체조 연스	1인/월	일 반 3회 45,000 청소년 3회 40,000	체조 연스	1인/월	일 반 3회 45,000 청소년 3회 40,000	체조 연스	1인/월	일 반 3회 45,000 청소년 3회 35,000					
	< 신 설 >	합합 연스	1인/월	일 반 2회 35,000 청소년 2회 30,000 어린이 2회 25,000	합합 연스	1인/월	일 반 2회 35,000 청소년 2회 30,000 어린이 2회 25,000	합합 연스	1인/월	일 반 2회 35,000 청소년 2회 25,000 어린이 2회 20,000					
		발 레 나이트 연스	1인/월	어린이 2회 40,000 일 반 1회 30,000	발 레 나이트 연스	1인/월	어린이 2회 40,000 일 반 1회 30,000	발 레 나이트 연스	1인/월	어린이 2회 40,000 일 반 1회 30,000					
	차깅 연스	1인/월	일 반 2회 35,000	차깅 연스	1인/월	일 반 2회 35,000	차깅 연스	1인/월	일 반 2회 35,000						
	테니스장	연당 1인 2시간	1,500	1,200	테니스장	연당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테니스장	연당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 도 장	1인 2시간	500	300	공 도 장	1인 2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 도 장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단위는 동일 소속일치 10인 이상 2. 육구는 필수가 인원이 10인 이하일 때 16인으로 필수사용료 계산 3. 테니스장의 물 사용료는 25,000원을 정수함. 4. 수상 경기장(트랙) 워킹벨링, 보조경기장에서 소·중·고 등 도시 대표선수단 의 광복 훈련은 무료(무로사용자는 필히 비자를 득하여 사용하되 1회 사용비가 는 500 원으로 함) 5. 공 도 장의 필사용료는 20,000원을 정수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부천시체육조례 [제 2호]

##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내지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 연습 사용료 ( 제10조 관련)

(단위:원)

경기장별	사용구분	기 준	사용료		
			개인	단체	
종합운동장	육상장(트랙)	1인 2시간	300                      150		
	보조잔디구장	1인 2시간	3,000                    1,500		
시민운동장		1인 2시간	500                        300		
부천체육관	주 경기장	1인 2시간	2,500                    2,000		
	보조경기장	1인 2시간	1,000                    800		
송내 사회체육관		1인 2시간	1,000                    800		
소사국민체육센터	체육관	1인2시간	개인:1,000    단체: 800		
	수 영	개 인 (1인/일)	일 반 : 3,000 청소년 : 2,500 어린이 : 2,000		
			일 반	자유정기이용	60,000
				주5회강습	60,000
		회 원 (1인/월)	청소년	자유정기이용	50,000
				주5회강습	50,000
			어린이	주3회강습	40,000
	주3회강습	35,000			
	에어로빅	1인/월	45,000		
		1인/일	2,000		
	헬스장	1인/월	청소년35,000 일반 45,000		
		1인/일	청소년 1,500 일반 2,000		
	체즈댄스	1인/월	일 반	3회	45,000
			청소년	3회	40,000
	힙합댄스	1인/월	일 반	2회	35,000
청소년			2회	30,000	
어린이			2회	25,000	
발 레	1인/월	어린이	2회	40,000	
나이트댄스	1인/월	일 반	1회	30,000	
차밍댄스	1인/월	일 반	2회	35,000	
테니스장	면당	1인 2시간	1,500	1,200	
공 도 장		1인 2시간	500	300	
<p>○단체는 동일 소속팀의 10인 이상                      ○축구는 팀구성 인원이 16인 이하일 때 16인으로 연습사용료 계산                      ○테니스장의 월 사용료는 25,000원을 징수함.                      ○육상 경기장(트랙) 워밍업장, 보조경기장에서 초·중·고 및 도시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은 무료(무료사용자는 필히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되 1회 사용허가는 5일 이내로 한정)                      ○공도장의 월사용료는 20,000원을 징수함</p>					

[별표3]

## 방송 사용료 ( 제10조 관련)

(단위:원)

구 분			TV		라디오	
			국외	국내	국외	국내
중계방송	체육경기	종합운동장	100,000	60,000	50,000	30,000
		시민운동장	80,000	40,000	40,000	20,000
		부천체육관	60,000	40,000	40,000	20,000
		소사국민체육센터	60,000	40,000	40,000	20,000
	체육이외행사		120,000	120,000	60,000	60,000
녹화촬영	녹화 또는 녹음		30,000	20,000	20,000	10,000
	축구 또는 행사촬영		60,000	40,000	40,000	20,000
비 고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당해 체육시설 기본방송료의 2배 징수 ○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별표4]

## 상행위 사용료 ( 제10조 관련)

(단위:원)

구 분	기 준	요 금		
		주 경기장		기 타
		중 계 방송시	중 계 방송외	
영 화 촬 영	주 간	100,000		100,000
	야 간	150,000		150,000
에드벌룬 등의 계양에 의한 광고	1일 1개	5,000		5,000
게시부착 광고물(㎡당)	년 간	500,000		350,000
	5일 이내	60,000		40,000
	1일 초과	10,000		10,000
진열, 전람광고물 (3㎡이내)	1일 1개	80,000	50,000	30,000
진열, 전람광고물 (3㎡이상 6㎡이내)	1일 1개	150,000	100,000	30,000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	판매부수 1부당 가격	판매액의 10%		판매액의 10%
기 타 물 품 대 여 (판매대여)	매출금액 -원가	이익금의 20%		이익금의 20%
비 고	피켓 1회1개, 전단1,000매당 각 1,000원			

[별표5]

## 부속시설사용료 ( 제10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산 출 기 초	비고
라이트시설	기본료(40,000원)+(월기본료×일/30×사용면적)+실전기 사용료	
전기·조명등	기본료(10,000원)+(월기본료×일/30×사용면적)+실전기 사용료	
냉·난방	기본료(50,000원)+(월기본료×일/30×사용면적)+실사용 전기유류 고시가격	
음향시설	기본료(50,000원)+마이크사용료(1개당 5,000원)	
스코아판	1일 20,000원	
농구골대	1일 50,000원	
샤 위 실	1일 1회 기본료(20,000원)+전기사용료	
전 광 관	종 합 운 동 장	기본료200,000원, 단 영상부문 포함하여 사용시에는 1 회 100,000원을 추가 징수하고, 녹화 요구시에는 녹화 비 1일 100,000원을 별도 징수
	부 천 체 육 관	기본료 40,000원, 단 영상부문 포함하여 사용시에는 1 회 100,000원을 추가징수하고, 녹화 요구시에는 녹화비 1일 100,000원을 별도 징수
라인기계	1대당 × 1일 20,000원(석회포함)	
접 의 자	1개당 × 1일 300원	
탁 자	1개당 × 1일 2,000원	
발 언 대	1개당 × 1일 4,000원(대) . 2,000원(소)	
각실사용	1일 50,000원	
개 인 사 물 합	1개당 × 1월 3,000원 (임대기간 경과시 일할단위 계산 부과) ※ 이용대상자 : 정규회원에 한함	

- 전기, 난방 및 상·하수도요금은 계량기 등에 의거 사용량을 측정하여 일괄  
징수하며, 계량기 등에 의한 측정이 어려울 경우 전월 공공요금 사용료를 기  
준으로 사용료 산출(전월 공공요금/30일)
- 운영요원(전광관 조작요원포함)은 주최측에서 준비한다.
- 축구잔디구장은 1일 3계임을 초과할수없다.
- 축구잔디구장은 하절기 및 동절기 잔디상황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  
다.
- 체육경기시는 각실 및 집기, 운동기구 사용료 면제.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단위:원)					(별표2)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단위:원)					
경기장별	사용구분	기 준	사용료		경기장별	사용구분	기 준	사용료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종합운동장	육상장(트랙)	1인 2시간	300	150	종합운동장	육상장(트랙)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보조잔디구장	1인 2시간	3,000	1,500		보조잔디구장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시민운동장		1인 2시간	500	300	시민운동장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부천체육관	주 경기장	1인 2시간	2,500	2,000	부천체육관	주 경기장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보조경기장	1인 2시간	1,000	800		보조경기장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송내 사회체육관		1인 2시간	1,000	800	송내 사회체육관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소사국민 체육센터	체육관	1인2시간	1,000	800	체육관	1인2시간	(현행과 같음)			
	수 영	개 인 (1인/일)	일 반 : 3,000 청소년 : 2,500 어린이 : 2,000			개 인 (1인/일)	(현행과 같음)			
			회 원 (1인/월)	일 반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60,000 60,000 40,000	회 원 (1인/월)	일 반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청소년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50,000 50,000 35,000	청소년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현행과 같음)	
		어린이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40,000 40,000 30,000	어린이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현행과 같음)			
	에어로빅	1인/월	45,000			에어로빅	1인/월	(현행과 같음)		
		1인/일	2,000				1인/일	(현행과 같음)		
	헬스장	1인/월	청소년 35,000 일반 45,000			헬스장	1인/월	(현행과 같음)		
		1인/일	청소년 1,500 일반 2,000				1인/일	(현행과 같음)		
								일 반	3회	45,000
								청소년	3회	35,000
	<진 설>					힙합댄스	1인/월	일 반	2회	35,000
							1인/월	청소년	2회	20,000
								어린이	2회	20,000
						발 레	1인/월	어린이	2회	40,000
					나이트댄스	1인/월	일 반	1회	30,000	
					차별댄스	1인/월	일 반	2회	35,000	
테니스장	면당	1인 2시간	1,500	1,200	테니스장	면당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공 도 장		1인 2시간	500	300	공 도 장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 단체는 동일 소속팀의 10인 이상  
 ○ 육구는 필구성 인원이 16인 이하일 때 16인으로 연습사용료 계산  
 ○ 테니스장의 월 사용료는 35,000원을 정수함.  
 ○ 육상 경기장(트랙) 위령업장, 보조경기장에서 초·중·고 및 도·시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은 무료(무르사용자는 필히 허가를 득하며 사용하되 1회 사용허가는 5일 이내로 한정)  
 ○ 공도장의 월사용료는 20,000원을 정수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방송 사용료 (단위:원)							(별표3) 방송 사용료 (단위:원)						
구 분			TV		라디오		구 분			TV		라디오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중계방송	체육경기	중 합 운동장	100,000	60,000	50,000	30,000	중 합 운동장	( 현 )	행 과	같	음 )		
		시 민 운동장	80,000	40,000	40,000	20,000	시 민 운동장	( 현 )	행 과	같	음 )		
		부 천 체육관	60,000	40,000	40,000	20,000	부 천 체육관	( 현 )	행 과	같	음 )		
		< 신 설 >					소사국민 체육센터	60,000	40,000	40,000	20,000		
	체육이외행사	120,000	120,000	60,000	60,000	체육이외행사	( 현 )	행 과	같	음 )			
녹화촬영	녹화 또는 녹음	30,000	20,000	20,000	10,000	녹화 또는 녹음	( 현 )	행 과	같	음 )			
	축구 또는 행사촬영	60,000	40,000	40,000	20,000	축구 또는 행사촬영	( 현 )	행 과	같	음 )			
비 고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당해 체육시설 기본방송료의 2배 징수 ○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4) 상행위 사용료 (단위:원)				(별표4) 상행위 사용료 (단위:원)				
구 분	기 준	요 급		구 분	기 준	요 급		
		주 경기장	기 타			주 경기장		기 타
						중 계 방송시	중 계 방송외	
영 화 촬 영	주 간	100,000	100,000	영 화 촬 영	주 간	( 현행과 같음 )		
	야 간	150,000	150,000		야 간	( 현행과 같음 )		
에드벌론 등의 계약에 의한 광고	1일 1개	5,000	5,000	에드벌론 등의 계약에 의한 광고	1일 1개	( 현행과 같음 )		
게시부착 광고물(㎡당)	년 간	500,000	350,000	게시부착 광고물(㎡당)	년 간	( 현행과 같음 )		
	5일 이내	60,000	40,000		5일 이내	( 현행과 같음 )		
	1일 초과	10,000	10,000		1일 초과	( 현행과 같음 )		
진열, 전람광고물 (3M이내)	1일 1개	50,000	30,000	진열, 전람광고물 (3㎡이내)	1일 1개	80,000	50,000	30,000
				진열, 전람광고물 (3㎡이상 6㎡이내)	1일 1개	150,000	100,000	30,000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	판매부수 1부당 가격	판매액의 10%	판매액의 10%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	판매부수 1부당 가격	( 현행과 같음 )		
기 타 물 품 대 여 (판매대여)	매출금액 -원가	이익금외 20%	이익금외 20%	기 타 물 품 대 여 (판매대여)	매출금액 -원가	( 현행과 같음 )		
비 고	피켓 1회1개, 전단1,000매당 각 1,000원			비 고	(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5) 부속시설사용료 (단위:원)			(별표5) 부속시설사용료 (단위:원)		
구분	산출기초	비고	구분	산출기초	비고
라이트 시설	기본료(40,000원)+(월기본료×일/30)+실전기사용료		라이트 시설	기본료(40,000원)+(월기본료×일/30×사용면적)+실전기사용료	
전기·조명등	기본료(10,000원)+(월기본료×일/30)+실전기사용료		전기·조명등	기본료(10,000원)+(월기본료×일/30×사용면적)+실전기사용료	
냉·난방	기본료(50,000원)+(월기본료×일/30)+실사용전기유류 고시가격		냉·난방	기본료(50,000원)+(월기본료×일/30×사용면적)+실사용전기유류 고시가격	
음향시설	기본료(50,000원)+마이크사용료(1개당 5,000원)		음향시설	(현행과 같음)	
스크린	1일 20,000원		스크린	(현행과 같음)	
농구골대	1일 50,000원		농구골대	(현행과 같음)	
샤워실	1일 1회 기본료(20,000원)+전기사용료		샤워실	(현행과 같음)	
전광판	종합운동장 기본료200,000원, 단 영상부분 포함하여 사용시에는 1회 100,000원을 추가 징수하고, 녹화 요구시에는 녹화비 1일 100,000원을 별도 징수		전광판	(현행과 같음)	
	실내체육관 기본료 40,000원, 단 영상부분 포함하여 사용시에는 1회 100,000원을 추가징수하고, 녹화 요구시에는 녹화비 1일 100,000원을 별도 징수			(현행과 같음)	
라인기계	1대당 × 1일 20,000원(석회포함)		라인기계	(현행과 같음)	
절의자	1개당 × 1일 300원		절의자	(현행과 같음)	
탁자	1개당 × 1일 2,000원		탁자	(현행과 같음)	
발언대	1개당 × 1일 4,000원(대) , 2,000원(소)		발언대	(현행과 같음)	
각실사용	1일 50,000원		각실사용	(현행과 같음)	
	< 신설 >		개인 사물함	1개당 × 1일 3,000원 (임대기간 경과시 일할단위 계산 부과) ※ 이용대상자 : 정규회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 난방 및 상·하수도요금은 계량기 등에 의거 사용량을 측정하여 일괄 징수하며, 계량기 등에 의한 측정이 어려운 경우 전월 공공요금 사용료를 기준으로 사용료 산출(전월 공공요금/30일)</li> <li>○운영요원(전광판 조작요원포함)은 주최측에서 준비한다.</li> <li>○축구잔디구장은 1일 3계임을 초과할수없다.</li> <li>○축구잔디구장은 하절기 및 동절기 잔디상황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li> <li>○체육경기시는 각실 및 집기, 운동기구 사용료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과 같음)</li> <li>○(현행과 같음)</li> <li>○(현행과 같음)</li> <li>○(현행과 같음)</li> <li>○(현행과 같음)</li> </ul>		